

**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** (제20조제1항 관련)

1. 무상수거대상 식품등: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을 수거할 경우

2. 수거대상 및 수거량

가. 식품(식품접객업소 등의 음식물 포함)

| 식품의 종류  | 수거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|--|--|
| 1) 가공식품   | 600g<br>(ml)<br>(다만, 캡<br>슐 류 는<br>200g) | 1.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,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·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.   |
| 2) 유탕처리식품   | 추가1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3) 자연산물<br>○ 곡류·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<br>○ 채소류<br>○ 과일류<br>○ 수산물 | 1~3kg<br><br>1~3kg<br>3~5kg<br>0.3~4kg   | 2.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, 방사능검사,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(다만,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.3kg).<br>3.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.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.6kg을 추가로 수거하고, 밥·생버섯·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.<br>4.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(세균발육검사용 5개,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)를 수거하여야 한다.<br>5.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 이어야 한다.<br>6.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.<br>7.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 |

|  |   |
|--|---|
|  | <p>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.</p> <p>8.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식품등 시험·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·검사기관(이하 이 표에서 "시험·검사기관"이라 한다)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.</p> |
|--|---|

나. 식품첨가물

| 시험항목별   | 수 거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시험  | 고체: 200g<br>액체: 500g(ml)<br>기체: 1kg |
| 비소·중금속 함유량시험  | 50g(ml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 고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1.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.</p> <p>2.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시험·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.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다. 기구 또는 용기·포장

| 시험항목별   | 수 거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재질·용출시험   |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에 대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|
| 비 고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1.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.</p> <p>2.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시험·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.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